

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핵심(요약)설명서

원금 손실 가능 상품	본 위험고지의 안내문은 금 현물시장 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금 현물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금 현물시장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과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.
	[주의] 본 상품에 대해 고객님의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,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■ 유사상품과 구별 되는 특징

금현물	<p>금현물은 금지금(金地金)중 한국거래소가 정한 품질 및 외형요건을 만족하는 순도99.99% 중량 1kg 또는 100g인 골드바(Gold bar)를 말합니다.</p> <p>품질인증기관(한국조폐공사)의 기술요건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 등을 거친 생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골드바 또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(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)의 골드바만을 거래합니다.</p>
-----	---

■ 유사상품과의 비교표

구분	금현물	장내파생상품(금선물)	국내주식
법적성격	금현물 (원금손실가능)	파생상품 (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)	증권 (원금손실가능)
만기	없음	있음	없음
주요상품	골드바 등	코스피200 선물·옵션등	코스피200종목 등
거래대상	매도매수가능	매도매수가능	매도매수가능
특징	거래조건 표준화, 일중가격제한폭 존재	기초자산, 거래단위, 만 기등 표준화	거래조건 표준화, 일중 가격제한폭 존재

민원 우려로 인한 속지 필요사항 안내

■ 발생 가능한 불이익

① 금은 과거 **화폐적 기능**을 담당하며 국내외 경제 급면 상황에서 중요한 대외 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**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금가격이 급변**할 수 있습니다.

금지금(골드바)의 **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*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▶ 투자자 유의사항

① 금지금(골드바)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126조의7 제1항제2호에 따라 **금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** 됩니다

② 금 실물의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**본인 소유의 금지금(골드바)을 인출**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(평균매수단가에 실물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)의 **10%를 부가가치세로 납부** 하여야 합니다.

③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주문 체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위탁매매수수료 보관수수료 및 실물인출 시 납부하는 수수료 등 **모든 수수료는 10%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** 합니다.

■ 민원 및 상담 연락처

고객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고객센터 (TEL :02.3771.8888) 홈페이지 ([www. eugenefutures.com](http://www.eugenefutures.com)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설명서

※ 본 설명서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한 국 금 용 투 자 협 회

※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대상이 실물(Physical goods)인만큼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주식, 채권,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관련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.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의 위험성

1. 가격변동 위험

-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금지금(골드바)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2. 금의 화폐적 기능에 따른 위험

- 일반적으로 금은 과거 화폐적 기능을 담당하여 국내외 경제급변상황에서 중요한 대외 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금가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.

II. 금 현물시장 개요

1.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

본 설명서 상의 금현물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시장 ("KRX 금시장"이라 함)을 의미하며,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일반회원(투자중개업자, 증권사·선물사)에 대한 매매거래 위탁을 통해 동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.

2. 주요 거래제도

가. 매매거래 대상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 제1항 및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(金地金) 중 한국거래소가 정한 품질 및 외형요건을 만족하는 순도 99.99%, 중량 1kg 또는 100g인 골드바(Gold bar)를 말합니다.
-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생산하거나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수입한 금지금(골드바)로서 순도, 중량, 브랜드, 제조일련번호 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.

* 골드바(Gold bar) 품질 관리

- 국내에서 생산된 골드바 : 품질인증기관(한국조폐공사)의 기술요건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 등을 거친 생산업자가 생산한 골드바만 거래
- 해외에서 수입되는 골드바 :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(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)의 골드바만 거래

나. 매매거래단위, 호가수량단위, 실물인출단위

- 매매거래단위 및 호가수량단위는 1g이고 호가가격단위는 10원이며, 1g당 원화 (예: 50,000원)로 가격을 표시하고 1회 최대 5,000g(5kg)까지 호가가 가능합니다.
- 실물인출단위는 종목별 인수도 단위입니다.
(1kg종목 : 1kg당 실물인출 가능, 100g종목 : 100g당 실물인출 가능)

다.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

- 매매거래시간 : 09:00~15:30
 - 시가단일가매매 : 08:30~09:00 (30분)
 - 접속매매 : 09:00~15:20
 - 종가단일가매매 : 15:20~15:30 (10분)
- 호가접수시간 : 08:30~15:30
- 매매거래 개시 전 30분간 시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고 매매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종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으며, 그 이외에는 접속매매 체결을 위한 호가를 접수 받습니다.

라. 호가의 종류 등

- 호가는 지정가호가(종목·수량·가격을 지정하는 호가)만 가능하고 전량충족조건(FOK : Fill or Kill) 또는 일부충족조건(IOC : Intermediate or Cancel)의 호가조건 부여도 가능합니다.
- 호가는 접수 시점부터 매매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.
- 금 실물사업자의 생산 등을 위해 필요한 즉시 수요를 고려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 한하여 금 실물사업자에게 동일한 가격에서 우선 체결권을 부여합니다.

마. 호가의 제한

- 호가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10%이고 기준가격은 전일 종가이며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기준가격이 됩니다.
- 전산시스템 장애 또는 매매거래 폭주로 매매거래가 중단될 경우에는 모든 호가접수의 제한이 가능합니다.

바. 매매체결방식

- 시가·종가 결정시 및 매매거래종단 후 재개 시 최초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으로 체결되고, 그 외의 매매거래는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 (접속매매)방식으로 체결됩니다.

-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·매매목적·시간우선의 원칙, 복수 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·시간우선의 원칙으로 체결됩니다.

사. 결제방식

- 매매거래 후 금 실물이 필요한 금 실물사업자의 참여에 따라 금 현물시장의 **결제일은 매매거래가 체결된 당일이며, 오전 및 오후 2회(11:30, 16:30)**로 나누어 결제합니다.
단, 한국거래소 또는 당사에 사정에 따라 결제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결제 후 매수자는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(골드바)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매도자는 현금을 이체 받게 됩니다.

아. 실물 인출

-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(골드바) 중 본인의 지분에 대해 실물인출단위로 인출이 가능합니다.
- **당일 9시 30 이후에 실물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.**
 - * 실물인출의 경우 운송업체 및 고객 직접 실물인도(한국예탁결제원 본원)의 방식으로 인출 가능합니다.
 - * 운송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실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, 인출 가능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- * **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한번 인출된 금지금(골드바)은 다시 입고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시킬 수 없습니다.**

3. 거래방법

가. 주문의 방법

-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시장과 동일하게 전자통신(회사와 전자통신방법에 따른 계약을 사전에 체결한 경우 HTS), 전화, FAX, 문서 등의 방법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.
- 금 현물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정하여 적격금지금생산업자, 적격금지금 수입업자 및 적격금지금 유통업자가 매도한 금지금(골드바)만 거래되므로,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도할 수 없음에 따라 **최초 매매거래는 매수부터 가능합니다.**

나. 위탁증거금 납입

-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전액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고(현금 위탁증거금률 100%),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금지금(골드바)한도 내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.

4.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조세 관련 유의사항

가.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

- 금지금(골드바)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
나. 금 실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 납부

-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본인 소유의 금지금(골드바)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 (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)의 10%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다.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

-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해 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회사에 주문·체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위탁수수료 및 실물 인출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10%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5. 기타

가. 수수료에 관한 사항

- 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주문수탁 및 금지금(골드바) 실물 인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은 위탁수수료율 및 인출수수료 등을 회사 홈페이지(www.eugenefutures.com) > 고객센터 > 업무안내 > 수수료 예탁금이용료안내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나. 장외 계좌간 대체 금지

-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이외에 타인계좌로의 계좌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